

【 11 】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6. 11. . . .

제 출 자 : 양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2006년 11월 1일 대통령령 제19723호로 공포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제4항)
- 나.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 하였으나 육아휴직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포함하도록 함(안 제19조제2항)
- 다.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 (헌혈의 권장)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함(안 제24조10호)
- 라.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후 유산·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하고,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산후에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배치하도록 함(안 제25초제2항, 제6항).
- 마.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제7항 [별표 3])
- 바.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.(안 제25조제8항 ~ 제9항)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근무시간)”을 “(근무시간 등)”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

- ④시장은 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공무원 중 원격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이라 함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, 휴직기간·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

1. 임신·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
2.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
3.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

제2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0. 「혈액관리법」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

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~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임신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
- ⑥ 임신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또

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·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
1.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(이하 "임신기간"이라 한다)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2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3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
⑦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

⑧ 시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5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, 장기재직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분할휴가를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.

⑨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2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 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[별표 3]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구분 란의 출산 일에 다음과 같이 란을 신설한다.

입양	본인	14
----	----	----

비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지 않는다. 다만, 장기근속휴가를 5일미만 사용한 공무원은 5일에 대한 잔여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.

< 신 설 >

제25조(특별휴가) ① (생략)

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

< 신 설 >

< 신 설 >

< 신 설 >

10. 「혈액관리법」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

제25조(특별휴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임신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

⑥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·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
1.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(이하 "임신기간"이라 한다)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
2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
3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
⑦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⑧시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5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, 장기 재직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분할휴가를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

< 신 설 >

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5조제1항
관련)

(별표 3)
경조사별 휴가일수표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○ 본인	7
	○ 자녀	1
출산	○ 배우자	3
입양	< 신 설 >	
사망	○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○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○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○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	3
	○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탈상	○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

비고 :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
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
산할 수 있다.

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2항
의규정에 의한다.

⑨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
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
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
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
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2월이 되는
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
준비휴가를 얻을수 있다.

[별표 3]

(별표 3)
경조사별 휴가일수표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○ 본인	7
	○ 자녀	1
출산	○ 배우자	3
입양	○ 본인	14
사망	○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○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○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○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	3
	○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탈상	○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

○ _____

○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
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